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9987호, 2024. 1. 9. 공포 및 시행)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라, 변동된 유가를 반영한 2024년 적용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안전운송원가를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공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변경(안 제1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변경(안 제2호)

다. 시행일 변경(부칙)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30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019, 4025 (팩스 044-201-5601)
- 전자우편(이메일) : hun7280@korea.kr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